

1. 개정이유

공관 신설에 따른 달러화 지급 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5조의 조정기준에 따른 UN 및 ECA 생계비지수 합산 결과를 근거로 달러화 지급 신설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지역등급 설정

공관	기준 지수	지역 등급
주보츠와나 분관	87.73	‘다’ 등급
주잠비아 대사관	96.56	‘라’ 등급
주시에라리온 대사관	96.43	‘라’ 등급
주수리남 분관	95.94	‘라’ 등급
주마셜제도 대사관	42%(미국무부 등급)*	‘마’ 등급
주아르메니아 대사관	111.79	‘바’ 등급
주쿠바 대사관	116.19	‘사’ 등급

* 마셜제도의 경우 UN 및 ECA 생계비지수가 부재함에 따라, 미국 국무부 생계비지수를 기준으로 재외근무수당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다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필리핀(마닐라)”를 “필리핀(마닐라), 보츠와나”로 하고, 라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트리니다드토바고”를 “트리니다드토바고, 잠비아, 시에라리온, 수리남”으로 하며, 마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파푸아뉴기니”를 “파푸아뉴기니, 마셜제도”로 하며, 바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리비아”를 “리비아, 아르메니아”로 하며, 사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을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쿠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지급의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개정 2022. 9. 21.>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구 분 가 지 역	대상지역	구 분 가 지 역	대상지역
나 지 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 지 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다 지 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다 지 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라 지 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다 지 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보츠와나
마 지 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라 지 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잠비아, 시에라리온, 수리남
마 지 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마 지 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바		바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마셜제도
지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지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아르메니아
역		역	
사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사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쿠바
지		지	
역		역	
아		아	
지		지	
역		역	
자	투르크메니스탄	자	투르크메니스탄
지		지	
역		역	
차		차	
지		지	
역		역	